

의안번호	제522호
의결 연월일	2024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최정훈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4년 3월 4일

#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정훈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2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3월 4일

발의자 : 최정훈, 노금식, 김성대,  
오영탁, 이옥규, 이태훈,  
임영은

## 1. 개정이유

- 현재 조례 내용상 표창금지 규정 외에 다른 종류의 포상을 금지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포상제한 규정이 없음.
- 포상금지 규정이 표창 외 다른 포상의 종류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을 제한함으로써 입법 공백을 메꾸고 포상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영예성을 높이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기존 표창금지 조문의 적용 대상을 상장을 제외한 나머지 포상 대상 전체로 확대함(안 제12조 제목, 제6호 단서 및 제8호)
- 형사사건 관련 포상금지 대상자에 재직 중 행위로 벌금 200만원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가 벌금 200만원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함(안 제12조제7호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상훈법」, 「정부표창규정」

나. 관련부서 협의: 충청북도 행정국 인사혁신과

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

라. 조례안예고 : 예고 대상(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)

##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표창금지)”를 “(포상금지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표창대상자”를 “포상대상자”로 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상장의 경우는 제외한다.

제12조제6호 단서 중 “표창대상자”를 “포상대상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호(중전의 제7호) 중 “표창계획에 표창금지”를 “포상계획에 포상금지”로 한다.

7.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벌금 2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벌금 2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<u>표창금지</u>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<u>표창대상자</u>로 선발할 수 없다. &lt;단서 신설&gt;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(모범공무원 포상의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). 다만, 공적이 현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<u>표창대상자</u>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7. 그 밖에 도지사가 <u>표창계획</u>에 <u>표창금지</u> 대상으로 정한 사람</p>	<p>제12조(<u>포상금지</u>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포상대상자</u>-----</p> <p>----- <u>다만, 상장의 경우는 제외한다.</u>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포상대상자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7. <u>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벌금 2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벌금 2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</u></p> <p>8. ----- <u>포상계획</u>에 <u>포상금지</u> -----</p> <p>---</p>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지방공무원법

제79조(표창)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.

### □ 상훈법

제8조(서훈의 취소 등)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,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.

1.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
2.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(敵對地域)으로 도피한 경우
3.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,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### □ 정부 표창<sup>3)</sup> 규정

제19조(표창의 취소) 제18조에 따라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, 시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시상을 취소한다.

제20조(표창 취소의 공표) 표창 추천권자는 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표창이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.

3) 해당 규정에서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인 '포상'과 성적에 대한 표창인 '시상'으로 구분됨.

##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 제1호

### ○ 사 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창이 제한되는 경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